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〈당헌〉

구 분	현 행	개정(안)
당 대표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	제 26 조 (당 대표의 선출)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다만, 최다득표한 자의 <u>득표율</u> 이 50%를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	제 26 조 (당 대표의 선출)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최다득표한 자의합산 득표율이 50%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
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	제 27 조 (선출직 최고위원)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4위 득표자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.	제 27 조 (선출직 최고위원)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 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.
청년최고위 원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	제 27 조의 2 (청년최고위원) ①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	제 27 조의 2 (청년최고위원) ①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후보자로 등록한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그 후보자를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명할수 있다.

구 분	현 행	개정(안)
	제 27 조의 4 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	제 27 조의 4 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
	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	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
	<u>에서</u>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	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 최다득
	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	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
	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	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
	정한다.	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ने नोज नो		
당 대표 및	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	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
최고위원	<u>에서</u>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	<u>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</u> 동일득
선출 방식	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	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
변경에 따른	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	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
자구 수정	로 정한다.	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	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	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
	실시한 선거 <u>에서</u>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	실시한 선거 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
	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	<u>에서</u>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
	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	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
	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	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
	다.	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	<u>부칙<신설></u>	부칙(2024. 6. 19.)
효력발생		이 당헌은 2024년 6월 19일 개최한 제
시기		1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
, ,		력을 발생한다.
명문화		